

1. 개정이유

- 1)건설현장의 원활한 품질관리 및 양질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1) 철근 등 강재
- 2)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반영
- 3) 건축 및 토목 교량 등 기초
- 4) 그 외

3. 개정(안) 의견

- 1) 시험항목 추가 신설에 따른 시험비용 현실단가 변경
 - 시험기구 추가구매(단위수량 측정기) 국내 납품업체 파악: 약600~1000만원
 - 시험항목 신설은 되었으나 시험비용 (약4천원/회)은 현실적인 단가가 아님
 - 이로 인한 이전 계약현장 시험기구 추가구입비용 부담 작용 --> 시험비용 사용 부담으로 품질관리 부실우려
 - 시험기구 구입비용에 적절한 실질적인 비용 조사 및 적용 필요
- 2) 근본적인 현장 품질관리를 위한 현실 직시
 - 현재 건설공사업무 중 시공경력도 품질관리 수행기간에 80% 인정
 - 건진법 시행규칙 별표5. --> 이전보다 완화된 조건의 건설기술인 등급로 변경
 - 시험항목과 품질관리를 위한 법과 규정은 강화되었지만
 - 실질적인 품질관리업무 경험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도 품질관리를 할수있어 품질 관리 이해도 부족한자가 품질관리 실시중
 - 품질관리 대상공사 건설기술인 등급은 하향조정 되어 교량이나 터널등 전문 품질 관리 인력의 능력, 지식, 경험 부족이 현상태
 - 품질관리자 등급은 품질관리업무 경력이 있는 기술자만 인정 또는 시공경력을 품질관리자 등급으로 인정(80%)은 조정할 필요 있음
 - 건진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품질관리대상공사 등급은 건설기술인이 아닌 품질 관리자로 변경, 또한 시험실 규모는 현장 공시체 양생수조, 압축강도시험기, 도로포장, 터널공사등 토목은 현실에 맞는 시험실 규모 산정

4. 현장 품질관리자의 공통된 의견

- 1)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법이나 시행규칙만 강화되어서는 현장에서의 품질과 안전은 변화에 한계가 있음
- 2) 위 사항에 대하여 관리청 담당자께서는 해결의지를 가지시고 고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수 있도록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